

대전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3가단20631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7.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2. 11. 4. 접수 제466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성대

(별지 1)

## 목록

###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경주시 C에 있는

D콘도미니엄

E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F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콘도미니엄

지하 10780.82㎡

지하 1층 2967.2㎡

1층 2860.82㎡

2층 2286.81㎡

3층 2286.81㎡

4층 2286.81㎡

5층 2286.81㎡

6층 2138.31㎡

7층 1989.81㎡

8층 1841.31㎡

옥탑 1층 283.06㎡

옥탑 2층 102.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G호

철근콘크리트조

49.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상북도 경주시 C 대 39145㎡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39145분의 47.58      끝.

(별지 2)

## 청 구 원 인

### 1.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원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대출약정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원고는 2017. 09. 12. H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B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안정)명목으로 대출금액 200,000,000원, 이자율 연 2.95%(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연 12%로, 원금 상환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며, 이자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실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약정서).

#### 나. 채무자 B의 미변제액

이 사건 사해행위인 매매 시점인 2022. 11. 3. 기준으로 채무자 B(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원고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 잔액은 176,384,232원입니다(갑 제2호증 채권확인서<sup>1)</sup>). 최근 시점인 2023. 2. 8. 기준으로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 합산하여 179,881,440원입니다(갑 제3호증, 채권확인서).

#### 다.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채무자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 약정 체결 후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 등 지급해야 하는 회수에정일인<sup>2)</sup> 2022. 09. 1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금과 이자 등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대출관리대장 p5 참조).

이에 원고는 공공기관인 관계로 내부 사정 등에 의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2023. 01. 20. 기한이익 상실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갑 제4호증 대출관리대장의 P4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미 성립하고 있었고 판례 등에 의하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청주지법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참조).

1) 원고 채권확인서 양식에 주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채권확인서 양식일뿐 소외 B는 개인사업체 운영 하는 채무자이며 별도의 연대보증약정은 없습니다

2) 대출관리대장의 회수에정일은 채무자가 납입해야 할 일자를 의미하며 수납일자는 채무자가 실제 변제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납일자가 공란인 경우는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관례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 사해행위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증여계약

채무자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등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추후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입증하겠습니다.

#### 나. 사해의사

채무자와 피고의 주소가 I아파트로 동 호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할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인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뒷받침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3. 결론

이와 같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